

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정재극*

요 약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Exterminating Violence in Military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officer

Jung, Jae-Keak*

ABSTRACT

Violent action is prohibited in military, and onus to maintain discipline is on commander. To complete this duty, junior leaders who work on the first line is on situation that their human rights are unprotected. And it is linked to military violence. To eradicate this kind of violence, reform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assure junior military leaders' human rights is needed.

Key words : Beginning military officers, Human rights, Violence, Military discipline, Army brutality

접수일(201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24일)

*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 본 논문은 수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 론

군 계급체계는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병은 입대와 동시에 인권은 유보되고 국가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군에 소집되어 내무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우리군의 구조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더구나 폭력이 결부되어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인하여 자살 또는 탈영 등 군 사기 저하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사소한 시비, 사적 체제, 고참병의 횡포, 상급자의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한 구제제도도 있지만 활용하기는 그리 녹녹치 않게 되어있다 [1] 이와같은 중심에는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초급간부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군대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급간부들은 연대급 이하 계대에서 복무하게 되며 병력지휘나 부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그 외 장비관리, 교육훈련 및 작전실시 등을 병행하고 있다. 초급간부들은 미숙한 업무처리와 군생활의 경험부족으로 상급자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초급간부들은 개인 능력, 출신과 계급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개인 소유 차량통제, 일과이후 시간통제, 열악한 숙소 시설과 개인부채 확인명목의 금융정보요구, 휴식권, 자기개발 억제요구 등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급간부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병사들과 1차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위치가 초급간부인 만큼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게 되면 권위적인 통솔방법이 병사들에게 미치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게 된다. 군대폭력이 발생 원인으로는 욕구불만과 부적응, 불성실한 복무태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와 응징의 방법으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정책적 배려도 부족한 상태에서 인권침해마저 심하다면 하부조직은 폭력으로 기강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현역병 입

영대상자 32만2000여 명 가운데 심리이상자는 2만6000여 명, 입대 전 범법자는 52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이러한 병사들은 관심병사들로 분류되는데 군대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급간부의 인권침해가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초급간부인권침해와 보호

2.1. 인권침해

초급간부의 인권은 군복무 환경상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전쟁을 가정한 병영생활과 훈련으로 인하여 인권은 당연히 유보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급간부들은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본인들부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인권보장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급간부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계대와 부서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병력관리, 장비 및 물자관리, 교육훈련, 각종 작업인솔, 당직근무 등 규정되고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비상대비계획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개인 휴식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수시로 침해당하고 있다.[3]

초급간부는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지휘 및 관리 하는 집단이다. 부사관은 분대장 또는 부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중·소위 경우에는 소대장이나 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병사들은 다양한 성향과 가치, 그리고 개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초급간부들은 경험이나 지식, 상황 대처능력, 리더십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과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4]

2.1.2 초급간부의 인권의식

초급간부들은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권은 침해받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초급간부는 부하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부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 계층과 지휘관 사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간부들은 어느 계층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즉 지휘관 또는 상급자로부터 임무에 대한 많은 지시를 받게 되고 그 지시를 부하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초급간부 계층은 지휘관으로부터 인격적인 질책이나 불신을 받게 되며, 부하들에게는 무능력한 간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급간부의 스트레스는 어느 계층보다 크다

초급간부들의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장병 인권은 법규에 의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병 계층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초급간부들이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지휘관이 휴식권이나 휴가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면서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초급간부 계층은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부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병사들의 권리 침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초급간부들에게 책임이 돌아오거나 부하로부터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게 된다.

2.1.3 초급간부 인권침해

초급간부 계층은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병 계층보다 인권침해를 훨씬 많이 받고 있으며, 지휘관과 부하사이에서 인권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법무실 인권담당 장교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간부들은 병 계층보다 인권침해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급간부 계층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초급간부 중 하사는 장기복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로 휴식권 등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복무의욕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계층은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상급자의 질책이 있을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초급간부 계층은 부대업무 외에도 학업을 병행하는 문제, 전역준비, 결혼 준비, 자기계발 활동 등 사적인 일로 인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경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될 수 있다.

2.2. 인권보호

인권침해가 취약한 초급간부들은 다른 간부 계층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일부 제한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폭력과 인권보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자유권에 속하는 군인의 대표적인 권리이다. 군내 폭력은 구타, 가혹행위 등의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포함된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강력한 처벌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급간부는 폭력행위 측면에서 부하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고 상급자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간 계층이다. 육군의 초급간부의 경우 2.2%가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경험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35%가 1회 또는 수회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5] 인격권을 대표하는 폭력행위들은 초급간부 계층에게 심한 모멸감과 자존감 상실을 주어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인은 군복을 입었지만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보장, 종교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다. 사적제재는 업무와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의 유형인데 초급간부들은 지휘관에 의한 권한 남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영내 출입차량에 대해 키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안 검열과 내무사열을 이유로 독신간부숙소를 무단출입 하거나 숙소 복귀시간 통제, 개인신용정보 제출, 군용 휴대폰으로 교체 요구, 휴무일 출근 강요 등 인권침해 유형이 다양하다. 사적영역에 대한 권리는 초급간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 부대, 지휘관 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사적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만과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6]

2.2.2 초급간부의 권리

군인은 헌법과 군 법규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초급간부들은 상급자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거권, 휴식권, 교통 통신권, 복지시설이용권 등에서 도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간부들의 경우 기혼자들은 일과시간 이후의 생활 등에서 미혼자들과 다르게 통제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업무전념과 건전한 소비생활, 사고방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적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급간부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야근과 휴일 근무를 장기간 수행하다보면 자신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타 계층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다. 부대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쁜 업무로 인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겠다는 건의를 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격오지에는 초급간부가 주로 배치되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갈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놓일 우려가 있으며 민간병원을 활용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로 망설여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초급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휴식권 측면에서 권리를 더 많이 침해받고 있다. 병사들은 자유시간을 사용하지만 초급간부들은 그 시간에도 당직근무나 병력통제, 교육 훈련준비, 부하 신상관리 등의 잡다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상급자가 부하

들의 휴식권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든 군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가진다. 초급간부에게 있어 쾌적한 환경은 주거시설, 복지시설, 식사, 보급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즐겁다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성하여 주는 것이 국가와 군의 책임이며 도리임에도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식 분야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도 군 숙소의 노후화는 만족하지 못할 수준에 있다. 또한 자기계발을 위해 위탁교육이나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한 실정이다. 부사관 계층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학습시간과 여건이 부족할 것이다.

3. 지휘권과 인권

초급간부 인권은 지휘권이라는 역할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발전될 수 없도록 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은 헌법에 국민이 향유해야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군대이지만 군복 입은 자신부터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할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군대의 존재 목적이 임무수행에 있어 헌법상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더라도 군인의 인권은 헌법이 범위 내에서 적극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들의 인권 보호는 지휘관의 권한이며 책무이기 때문에 지휘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휘관은 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7]

지휘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휘권은 첫째 부하들의 의견을 구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다. 둘째 지휘권과 인권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 일부 지휘권 행사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

이라는 상황을 대비하여 평소부터 지휘권 행사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휘관은 본인의 부대에 한하여 지휘권을 행사한다. 인권의 보장과 그렇지 않음은 영내에서 이루지는 것으로써 법규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휘권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내무생활, 지휘책임, 사적인 자리도 업무의 연장이고 무한한 지휘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인권보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군은 휴전상태이고 즉각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영내에서 혹은 주변에서 대기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무조건 지휘관만, 또는 인권만 강조해서는 안되는 구조이다. 지휘권과 인권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은 전시에 적과 싸워 이겨하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방법이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고, 법과 규정 그리고 방침에 의해 부대 운영을 한다면 지휘권이 인권과 충돌하는 것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군대폭력 발생원인

병영내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군 간부 질책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터 파고 들어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간부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담을 철저히 하고 보직조정이나 후송 등을 통해 건의를 해놓는 것이다. 보고받은 입장이 상급지휘관도 조치를 취해주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자주 발생한다면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 다독겨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군의 특수한 형태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내무생활

우리군의 특징 중 하나는 내무생활이다. 초급간부

들도 전입 후 일정기간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병사들의 실상을 접하게 된다. 좁은 내무실에서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관계로 상하서열이 분명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 전입신병은 소속대서열을 암기해야 하고 계급별 행동을 숙지하기 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여기에 근무수칙과 선임병들의 지시사항까지 모두 암기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결국 이를 빌미로 군대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입신병을 교육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는 계급은 일병 선임이며, 일병 말호봉은 내무반 일, 이등병 군기를 담당하고 상병 선임은 각 내무반 전체 군기를 담당하고 상병과 일병 말호봉, 일병 선임을 구타 가혹행위를 하며 상병 말호봉은 중대 내 전체 군기담당과 상병 선임을 구타가혹행위를 한다. 병장은 말로 지적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하나의 폭력집단인 것이다. 여기에 초급간부들이 24시간 병사들을 밀착하여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병장들에게 지시하면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간부들이 출근하고 있을 때는 병장들의 역할이 적지만 간부 퇴근 이후 이루어지는 내무생활은 간부들이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즉 앞에서 언급된 계급별 임무가 시행되고 간부가 없더라도 지휘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일직근무자가 있지만 상황유지, 근무투입, 무기관리 등의 임무를 하다 보면 내무생활지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군기는 유지하되 사고가 안 나갈 병장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단체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계급별 행동수칙이 대물림되는 내무생활은 개선되어야 한다. 아예 내무생활을 폐지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우리 군의 구조상 내무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기는 하겠지만 감시수단을 내무반과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지휘통제실에 전담 상황인력을 24시간 배치 운용방법도 대안이 되겠지만 근절대책으로는 미흡할 수 있다.[9]

4.2 임무수행의 경직성

병사들은 전입 후 1년 동안은 대부분 피해자의 위

치에서 군대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가 막상 자신도 상병이상 고참병이 되면 가해자의 입장이 되며 군대폭력에 무덤덤해진다. 후임병 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선임병 들의 압력이나 내무반 분위기,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자위한다. 심한 폭력이 아니라면 상관 없다는 타성에 젖어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후임병 시기에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선임이 되면 악습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지만, 후임들이 편한 것을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다시 선임병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이중에서 당하는 위치에 있는 일부 후임 병사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기 휴대 군탈이나 가해 병사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현상도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8]

4.3 초급간부와 병력의 질적저하

병사들의 1차 상급 간부인 하사는 고졸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도 임관식 전까지만 졸업만 가능해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이다. 간부는 병사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데 모든 면에서 미흡한 하사의 명령을 받아들이기에는 나이와 학력, 지적 수준에서 미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사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병사들보다 군 생활을 많이 할 때까지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간부이면서 간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사관 중 고졸 72%,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28%인데 반해 병사들은 고졸 21%, 대학교 재학 이상이 79%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병사들이 나이와 학력, 군 경험 등이 하사들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물론 모든 하사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부사관의 질적 수준이 낮음은 국회의원 박찬석 보고서 “부사관 정예화 방향에 대한 고찰”에서 연구되어 발표되기도 하였다. 부사관들이 지능면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병사들보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부사관이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단기복무 장교가 주축인 학군장교의 경우 병 군복

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 이후 지원자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활간 동,하게 방학을 반납하면서 까지 입영훈련을 받아야 하고 임관후 27개월을 복무하는 것도 병사들 보다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전역 후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장교 전역자 우대도 없어 지원자의 수준이 하향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 되었다고 학군단 훈육관들이 우려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관심병사로 분류되고 있는 비율이 전체 병력의 23.1% 이며 사고 예측 관별 검사에서 8%에 해당하는 5만 여명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내 폭력 성향 등 정서적, 심리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병무청 소속으로 활동중인 임상심리사는 27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1차 임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5만 4450여명을 상담해본 결과 1인당 1일 10명씩 연간 2000여명을 검사한 셈이다.[10]

군에서 활용중인 심리 상담사는 사단 단위 1명에서 연대단위로 하향 운용 중에 있는 것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전공 인력은 보수가 적고 격오지 근무가 많아 지원자가 드물고 예비역 간부들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4 행정업무의 증가

초급간부들은 군에서 출퇴근이 아닌 일과 시간만 명시되어 있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까지 부대에 남아 잔무, 또는 일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퇴근을 고려하여 퇴근을 해야 함을 체득하게 된다. 초급간부들은 빨리 퇴근을 하려고 해도 교육과 훈련, 병사관리와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다 보면 퇴근이 항상 늦게 마련이고 주말에도 위수지역 이탈방지를 위해 출근을 강요 받거나, 영내에서 대기, 출타시 위치보고 등을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확인과 업무지시 등은 병사들과 같이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심적 여유를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최일선에서 전

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분대급 이상 중대급 이하의 간부들에게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각종 검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장려사항에 대한 행정 서류, 서면보고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4.5 소결론

군대에서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대 폭력은 잡초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군의 구조이다. 군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조치라고 내놓은 방법이라는 것이 상급 지휘관의 문책만 늘어나고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군 생활처럼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는 이상 군대 폭력은 없어질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군대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큰 정책의 틀에서 징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시점에 와있고 병사위주의 군 구조를 간부위주로 편성하고 유사시 동원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첨단 장비운용 인력을 부사관(전문하사 포함)으로 대체하고 병사들은 훈련소 수료후 소집해제 시킨 다음 일정기간 동원 훈련을 통하여 병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초급간부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여파는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후임간부, 병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나쁜 악습을 군대니까 용인하고 지휘권이 인권보다 우위에 있는 이상 군대에서 인권의 보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초급간부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고급간부가 주도해야 한다. 초급간부도 세월이 지나면 고급간부로 진출하게 된다. 이때 변화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고급간부의 위치에서 보면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초급간부시절에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군

구조상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그냥 그렇게 답습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급간부시절에 인권침해를 당했던 현재의 고급간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도모한다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급간부 부터 인권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고급간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초급간부의 인권이 보장되고 올바르게 교육받은 이들이 배운대로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군대내 폭력행위도 근절 정도는 아니지만 현저히 줄 것으로 보여진다.

지휘권과 인권의 충돌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군대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휘권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기 앞서 인권을 바탕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며 고급간부 부터 솔선수범하고 초급간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내무생활을 하는 동안은 인권의 침해와 폭력행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휴전 상태인 현재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첫째 내무생활에서 서열을 없애는 방법으로 일부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기별 내무반 운용이다. 장단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내무생활간에 발생하는 폭력의 대물림, 가혹행위가 발생할 시간과 장소, 인원 등이 함께 구성되지 않도록 군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초급간부와 병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첨단 무기를 늘려 소수 정예 자원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력으로 해야 할 부분을 최소화 하고 각종 첨단 장비를 군에 접목시켜 우수한 자원이 모병되어 군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초급간부가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각종 검열시 행동화 상태로 판단하고 근거유지를 위한 문서화된 행정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 오로지 훈련한 행동만으로 검열해야 할 것이다.

전시에 인권을 보장하며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면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이 될 것이다. 생사를 걸고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인권은 폭력이라는 환경에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평시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인권이 침해되고 임무를 우선하는 이유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환경임을 이해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부대를 운용하는 지휘관의 인권의식변화는 군대 폭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장차 국가차원에서 군 조직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징집하여 주둔하는 방식에서 평시에 동원훈련, 유사시 즉각동원체제로 전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변화의 결실은 인권침해와 군대폭력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거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pp 80-81, 2008.
- [2] 조선일보, 2014. 08. 11
- [3] 이선규, “초급간부 리더십교육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2-15. 2008.
- [4] 김용규, 황정호,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pp10-12, 2006.
- [5] 한국국방연구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pp33-35. 2010.
- [6] 한영수, “장병인권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김용규, 황정호, 전개서, pp3-15, 2006.
- [7] 장성대,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7, 2003.
- [8] 정우근 외1, “군무이탈 예측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pp2-3, 2008.
- [9] 정의광, “군 폭행사건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 [10] 조선일보, 2014. 08. 12

[저자소개]



정재극 (Jung, JaeKeak)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e-mail : kuk2934@naver.com